

제 1296 호
1986. 7. 1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영문부
편집인: 공도관리관 우
전화: 731-6111-3
인쇄처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: 735-3337

신 길	공 보 과	경 개	공 보 제 과
접수일시	1986. 7. 1	로 도 제 과	
처리과	과외	(공람)	

시 보

차 례

- ◎ 고 시
 - 제 441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2
 - 제 442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
- ◎ 공 고
 - 제 368 호 : 북동신시가지중심지구 (19 개울리) 도시계획 (안 공람) 3
 - 제 373 호 : K. S 표시경지처분해제 4
 - 제 374 호 : 비료단속검사결과에대한행정처분사양 4
 - 제 376 호 : 마포로제 2 구역제 1 - 2 지구채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
인가를위한공람 4
- ◎ 사 령

공									
람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41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시고시 제 68 호(85.2.5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101 호(85.2.16)로 지적승인된 성동구중곡동산 3-18 호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986. 7. 1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의 시행지: 성동구중곡동산 3-18 호 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학교) 대원중고등학교 시설 확충
- 다. 사업의 규모
 - 1) 시행면적 - 24,686㎡
 - 2) 기존(연면적) - 22,588.23㎡
증축분 - 1,002.75㎡(6층 증축)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 이경호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착 수 : '86. 7
 - 준공예정일: '86.12.31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

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: 별첨(생략)
사. 토지조서 및 위치도,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면: 별첨(생략)
아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: 별첨(생략)
자. 기타 의문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(445-8705)로 문의바람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42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0 번지의 8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6. 7. 1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명: 민영(인립)주택건설 사업계획
- 2. 사업주체: 현대차량 직장주택조합의 3개조합
- 3. 사업시행 변경 내용
- 4. 도 서: 생략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위 치	구기동 130 번지의 3 필지	구기동 130 번지의 8 필지
대지면적	6,363 ㎡	16,910 ㎡
규모	연립주택 3층 3동 36 세대	연립주택 3층 8동 130 세대
사업기간	85.6 ~ 86.5	85.6 ~ 87.6
사업주체	현대차량 직장주택조합	현대차량 직장주택조합 할라건설 한국경제신문사주 청와대직원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68 호

북동신시가지중심지구(19개블럭)
도시설계(안)공고

1.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

가) 대상구역

장기종합계획으로 수립된 북동신시
가지 중심지구 도시설계(안)을 건축
법 제 8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
제도시를 서울특별시, 북동신시개발
사업소, 강서구청에 비치하고 공람
일로부터 30일은 일반인의 출입을

1986. 6. 28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구 분	위 치	면적
북동신시가지 중심지구도시설계	강서구북동, 신정동 중심측내 19개 블럭	면적 : 447 면적 : 607,000 ㎡

나) 도시설계 시행지침 내용

- 대지에 관한 사항
연벽개발, 대지의 분할과 방법
- 건축물에 관한 사항
용도, 높이, 건축한계선, 벽면지정선
-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
주차장입구, 공공용지, 공공조경
- 통로에 관한 사항

- 유체보행통로, 보행자 전용도로,
보행자 전용도로
- 다) 공람기간 : 1986. 7. 1 ~ 7. 31
(30일간)
- 라)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과, 북동신시개발사업소, 건축공정
과, 강서구청 건축과
* 관치본관 관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73 호

K.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'1986.2.1 자 (서울특별시 공고 제 57 호)로 KS 표시 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한다.

1986.6.30

서울특별시장

1. 업체명 : 대동기공주식회사
2. 대표자 : 김 영 국
3. 소재지 : 서울 구로구 독산동 999-3
4. 규격번호 : K.S.C 8414
5. 규격명 : 스위치 박스
6. 해제일자 : '1986.6.2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74 호

비료단속검사결과에대한
행정처분사함공고

비료관리법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
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
동법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다음
과 같이 공고한다.

1986.7.1
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 : 1-1
2. 허가년월일 : '1984.9.6
3. 대표자성명 : 홍 연 석
4. 대표자주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
도동 한성아파트 B동 601호
5. 사업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도봉구
방학동 7번지
6. 상 호 : 서울미원 (주)
7. 비료의 종류및 품목 : 제 3종 복합
비료 10-12-11 (고추용)
8. 영업정지기간 : '1986.7.1 - 9.30
(3 개월)
9. 사 유 : 기준미달 (가리전량)
보증량 : 11 %
분석결과 : 9.35 %
(미달량 1.65 %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76 호

마포로제 2 구역제 1-2 지구
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
인가를위한공람공고

1. 신설부교서제 345 호 ('79.9.21) 로
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교서제
412 호 ('81.11.13) 서울시교서제 275
호 ('86.5.1) 로 사업계획 결정 및
변경 결정된 마포로제 2 구역제 1-2
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
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 발기인
대표 손봉규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

17 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있어 동법제 15 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것이나, 미수령자에게는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것이며,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략 기간내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.

1986.7.1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의 명칭 : 마포로제 2 구역 제 1-2 지구 재개발사업
 나. 시행구역 : 마포구 공덕동 417-2 외 53 필지 (제 54 필지)
 다. 시행면적 : 4,109 ㎡
 ○ 대지면적 : 3,191 ㎡
 ○ 공공시설면적 : 918 ㎡
 라. 공략내용 : 사업시행계획서 및 강판
 마. 사업시행예정자 : 마포로제 2 구역 제 1-2 지구 재개발조합
 받기인 대표 손 봉 규
 바. 공략기간 : '1986.7.2-1986.7.31 (30 일간)
 사. 공략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(731-6355-9)

사 령

◎ 1986년 6월 30일자

령 제 295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
원 봉 재	지방공무원법 제 6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)	마 포 구
김 회 경	"	성 남 구
나 명 길	"	"
안 기 환	"	용 산 구
서 재 정	"	서 대 문 구
백 명 숙	"	관 약 구
장 홍 수	"	강 남 구
김 원 신	"	강 서 구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기성	지방공무원법 제 66 조 제 5 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	구로구	지방행정주사보
이용교		성동구	지방기계공
박부수		마포구	
신상복		동부건설사업소	
◎ 1986년 7월 1일자			령 제 297 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창희	복직을 명함.	시립부녀보호소	지방행정주사보
			령 제 298 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장정희	성북구보건소	성동구보건소	지방보건기사보
최수검	영등포구보건소 파견 ('86.7.1 ~ 86.9.30)	서대문병원	
권화영	환경청 파견 ('86.7.1 ~ 86.8.31)	동대문구	지방화공기원
			령 제 299 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박래문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1월간 감 봉에 처함.	목동지구 개발사업소	지방건축기사
이재진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 함.	종합건설부	지방토목기사
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위	직 명
김 경 복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, 3 호의 규정에 의거 1년 6월간 정직에 처함.	시 립 회	장	지방민중
김 병 연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,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	부 동 지 구	개발사업소	개발사업소
이 준 규	불 문 (경 고) 서울특별시 제 2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	종합운동장	관리사업소	지방전기기사보
◎ 1986년 6월 30일자 령 제 301호			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위	직 명
허 완	지방공무원법 제 6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	정 신 병 원	원 장	지방의사
주 수택	·	동 부 병 원	·	·
김형철	·	중구보건소	소 장	·
◎ 1986년 7월 1일자 령 제 302호			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위	직 명
박 현 식	울림빛전속담당관실 파견 ('86.7.1 ~ 86.12.31)	기술심사관	·	지방전속의사
김 선 방	·	종합건설본부	·	·
전 석 기	·	·	·	지방전속의사보
염 두 성	·	·	·	·
최 신 복	·	·	·	지방전속의사

8-8 제 1296 호 시

보 1986.7.1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이 용 대 장 택 상 오 준 섭	울담픽토목담당관실 파견 ('86.7.1 ~ 86.12.31)	종합건설본부	지방토목기사보 지방농림기원보
◎ 1986년 7월 1일자		명 제 303 호	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박 영 복	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	지방기계장 (7 등 급)
서울특별시장			